

의안번호	2215093
의 퇴 인	이재관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7.
추계번호	25A6008

소재 · 부품 ·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)	○ 정부는 특화선도기업, 중핵기업, 전문기업,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(이하 “특화선도기업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－ 2. 재정, 금융 등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 － 3. 연구개발, 인력양성,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－ 4. 기술·인력·금융·경영·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·알선 － 5. 특허,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－ 6.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－ 7.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2	안 제47조의2(특화단지 발전계획 등의 수립)	○ 특화단지 관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또는 5년 단위의 특화단지 발전계획(이하 “특화단지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7조의2(특화단지 발전계획 등의 수립)	

2. 상세 사유

가.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(안 제16조)

- 안 제16조는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 “중핵기업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, 중핵기업에 대해 새로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이때 “중핵기업”이란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함(제2조제4호의2 신설)
- 다만, 개정안의 중핵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선정절차, 선정을 위한 조사,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선정될 중핵기업의 수를 추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현행 특화선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

[표 1] 특화선도기업에 대한 전용 프로그램

항목	지원내용
R&D	▶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(최대 50억원*/년 이내) 및 민간부담금 완화 * 지원 한도치이며, 사업규모·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*(참고) 으뜸기업 포함 컨소시엄별 정부출연금 지원내역 : (1기) 평균 113.7억/3.5년, (2기) 평균 87.5억/3.4년, (3기) 평균 112.2억/3.5년, (4기) 평균 92.3억/3.5년
실증지원	▶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,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-bed 개방 등
융자	▶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·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
펀드	▶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M&A, 설비투자 우선지원
규제특례	▶ ‘규제 하이패스 제도’ 도입하여 신속·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*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→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→ 제도 개선

자료: 산업통상부, 「2025년도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 5기 선정계획 연장 공고」, 20215.1.17.

다. 특화단지발전계획 등의 수립(안 제47조의2)

- 안 제47조의2에 따라 특화단지 관할 시·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또는 5년 단위의 특화단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 시행 후 개정안에 따라 새로 지정될 특화단지를 추정하기 어려워 관할 시·도지사가 수행할 특화단지 발전계획 연구용역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[표 2] 특화단지 지정 현황

구분	특화단지
1기	반도체(경기용인), 이차전지(충북), 디스플레이(충남), 탄소소재(전북), 정밀기계(경남창원)
2기	바이오(충북오송), 미래차(광주, 대구), 반도체(부산, 경기안성)

자료: 산업통상부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